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8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이인영 · 이기현 · 이정문

김영환 · 전진숙 · 소병훈

문진석 · 강준현 · 채현일

김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하는 회생·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됨. 법원의 판결 효력을 갖는 회생·파산과 달리 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 법에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의 기준을 채권 총액으로 하고 있어 고금리 채권 또는 장기연체 채권처럼 연체이자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원금 대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우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채권 총액 기준에 따라 동의 권한을 부여받은 고금리 대부업체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 및 채권자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 감수한 손실 위험인 원금에 상응하도록 채무조정안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이에 채무조정안 확정 절차가 채권 총액 기준에서 채권 원금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채무자가 그에 부합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5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총액”을 각각 “원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조정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2조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심의·의결되어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 여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채무조정절차) ① ~ ④ (생략)	제72조(채무조정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u>총액</u> 및 담보채권 (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u>총액</u>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 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⑤ ----- ----- <u>원금</u> ----- ----- ----- ----- <u>원금</u> ----- ----- -----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